#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82 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김현정・이성윤・김문수

김 윤·채현일·이강일

윤준병 • 양부남 • 강준현

양문석 · 정태호 · 박정현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 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내 상장사의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 적이 있음.

이에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함(안 제363조 등).

법률 제 호

##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63조제1항 본문 중 "2주"를 "3주"로 한다. 제542조의4제1항 중 "2주"를 "3주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3조(소집의 통지) ① 주주총	제363조(소집의 통지) ①
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	
일의 <u>2주</u> 전에 각 주주에게 서	<u>3주</u>
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	
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	
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	
만,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	
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	
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	
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	
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542조의4(주주총회 소집공고	제542조의4(주주총회 소집공고
등)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	등) ①
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	
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	
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	
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	3주
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	
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	
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	

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	
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	
다.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